



제 418국회 (정기회)
제 7차 정무위원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지체장 등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권〉

■ 이강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4077호)

2024. 11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이강일의원 등 13인

나. 제 안 일 : 2024. 9. 19.

다. 회 부 일 : 2024. 9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함)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,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③ ~ ⑤ (생략)	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다만,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-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¹⁾를 할 수 있도록

1)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, 제35조의2에 따른 전

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나,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²⁾인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³⁾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.

송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"열람등요구"라 한다)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.

2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아동학대행위자"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.

3)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,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참고로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임시조치 신청권(§13), 임시조치 청구권(§14), 보호명령 청구권(§47)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, 해당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106

4) 제13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)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,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, 그 **법정대리인(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**, 변호사(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.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